

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. 6. 11 선고 2019가단23070(본소), 2019가단23087(반소) 판결
[구상금 · 청구이의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(반소원고)C

변론 종결 2020. 5. 21.

판결 선고 2020. 6. 11.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의 피고(반소원고)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07차 541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.
2.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본소, 반소를 통틀어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본소 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 한다)에게 42,163,460원과 이에 대하여 2007. 7. 21.부터 2007. 8. 17.까지 연 5%, 2007. 8. 18.부터 2015. 9. 30.까지 연 20%, 2015. 10. 1.부터 2019. 5. 31.까지 연 15%, 2019. 6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반소 : 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피고 및 소외 D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2007차541호로 구상금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.

나. 원고는 위 지급명령상 신청원인을 '소외 D는 E 차량(이하 '이 사건 차량'이라 한다)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위 차량의 소유자인데, 2007. 6. 19. 06:30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주유소 앞 노상에서 소외 D가 망 H을 탑승시킨 채 차량을 운행하여 양화에서 부여방면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가로수와 전신주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(이하 '이 사건 사고'라 한다)로 인하여 차량에 탑승하였던 H이 사망하였으므로, 피고는 차량 소유자로서 망 H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, 원고가 정부보장사업에 기해 망 H의 상속인들에게 보상금으로 42,163,460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, 피고 및 소외 D는 연대하여 대위변제자인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'는 것이었다.

다. 위 법원은 2007. 8. 16. '피고 및 소외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2,163,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. 7. 21.부터 지급명령신청서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(이하 '이 사건 지급명령'이라 한다)을 하였고, 위 결정은 2007. 8. 17.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같은 해 9. 1. 확정되었다.

라. 원고는 소외 D의 상속인들 및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9가단30967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, 그 청구원인을 '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부상을 당한 I에게 정부보장사업의 재원으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31,552,860원을 지급하였고,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5,589,430원을 지급하였다'는 내용이었다.

마. 위 법원은 2009. 11. 6. '피고가 소외 D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,

피고가 소외 D의 이 사건 차량 운행 및 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, 피고가 자동차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상 자동차 소유 명의가 피고에게 잔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차량의 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'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[인정근거] 갑 제1호증, 을 제2호증의 1, 2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망 H의 상속인들에게 보상금으로 42,163,460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위 인정사실 및 아래에서 살피는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 및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이의 소에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,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운행자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신청원인으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.

따라서 피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,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.

판사이정재